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혜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11.

발 의 자 : 전혜숙 · 송기현 · 권철승
이종걸 · 오제세 · 이찬열
남인순 · 윤일규 · 김영진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,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되어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